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53944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D

변론 종결2016. 4. 7. (피고 1, 2, 3에 대하여)

2016. 5. 12. (피고 4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6. 6.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935,730,843원 및 그 중 935,729,625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12%,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피고 A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83,661,681원 및 그 중 483,660,463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7. 1.까지는 연 12%,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이 2015. 3.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73,169,8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73,169,8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935,730,843원 및 그 중 935,729,625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피고 A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83,661,681원 및 그 중

483,660,463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표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1	2012. 1. 13.	59,500,000	2015. 12. 31.(추후 연장된 것)	중소기업은행	70,000,000
2	2012. 2. 13.	90,000,000	2016. 2. 12.(추후 연장된 것)	중소기업은행	100,000,000
3	2012. 2. 27.	810,000,000	2020. 2. 27.	중소기업은행	900,000,000
4	2012. 4. 9.	180,000,000	2017. 4. 9.	중소기업은행	200,000,000
5	2013. 4. 23.	450,000,000	2015. 4. 23.(추후 연장된 것)	중소기업은행	500,0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피고 C는 이 사건 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않은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권리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5. 1. 25.부터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5. 4. 2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6. 12. 중소기업은행에게 939,434,855원(=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60,145,974원 +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91,021,169원 + 이 사건 3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45,058,176원 + 이 사건 4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91,140,374원 + 이 사건 5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452,069,1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중 3,705,23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218원(= 3,705,230원 × 12% × 1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다.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B은 2015. 3. 13. 사위인 피고 D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0.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 B은 연대하여 935,730,843원(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합계 939,434,855원 -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중 회수금 3,705,230원 +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21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 935,729,625원(= 939,434,855원 - 3,705,2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12.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15. 6. 30.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는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483,661,681원(= 이 사건 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합계 487,365,693원 -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중 회수금 3,705,230원 +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21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 483,660,463원(= 487,365,693원 - 3,705,2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12.부터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7. 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위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5. 6. 12.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3. 13.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채무발생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자연체를 시작한지 불과 2개월 후, 그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1개월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B이 피고 D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테크 수단 겸 퇴직 후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시가 상당액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도 피고 D이 부담하고 있는 등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은 피고 B의 사위로서, 피고 B이나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A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 D 스스로도 "피고 B의 딸 E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회사에 급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경위를 밝히고 있는바,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피고 A이나 피고 B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자연체를 시작한지 불과 2개월 후, 그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1개월 전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갑 제11호증의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20,000,000원, 근저당권자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5. 3.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99,830,114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9.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7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73,169,886원(= 173,000,000원 - 99,830,114원)이 되고,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73,169,886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 B과 피고 D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73,169,88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73,169,8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도정원

판사김신영

별지